#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아			
번호 2017 ~	의안 번호	2017 ~	

발의일자	2017. 2
발 의 자	표주숙의원외4명

## 1. 제안이유

○ 최근 핵가족화와 배우자 사별, 고령화 등으로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

「지방자치법」제9조, 제22조

나. 예산조치: 연간 134백만원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17. . . ~ . .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별첨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과 별거하며 사실상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 3.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 혼자 임종을 맞음으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

-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주민 홍보
- 5.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
-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
-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관내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 ② 군수는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 ③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2.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 4.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
  - 관련 조문: 제7조(지원사업 등)
-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계
총 비	용(a - b)	134	134	134	134	134	670
세출	군비(a)	134	134	134	134	134	670
세입	군비(b)	0	0	0	0	0	0

3. 관련 의견: 거창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노후관리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조성과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함.

# Ⅱ.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지원대상자 조사: 15,600명 30,000천원
- 심리상담 및 치료: 30,000천원
-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1,496명 51,012천원
-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05대 14,696천원
- 무연고자 장례비 지원: 2명 8,0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박완묵

#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16.12.30.] [법률 제13646호, 2015.12.29.,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97호, 2016.5.29.,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카. (생략)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 · 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6.(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